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1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정성호 · 오세희

장종태 · 김영호 · 진선미

김 윤 • 한정애 • 문진석

정희용 · 정춘생 · 서영교

김남희 · 임미애 · 정준호

임호선 • 이병진 • 이재강

신정훈 · 김원이 · 전진숙

이훈기 · 이수진 의원

(23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,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.

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,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,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 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.

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

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, 자녀의 친족,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(안 제925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- 1.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
- 2.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상속결격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25조(대리권, 재산관리권 상실	제925조(대리권, 재산관리권 상실
의 선고) (생 략)	의 선고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
	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
	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
	우에도 제1항과 같다.
	1.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
	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
	2.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
	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
	<u>한 경우</u>